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3.12.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정의, 자격, 임용절차, 계약기간, 구비서류, 임무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전임교원의 구분)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고황명예교수, 학연교수, 에미넌트 스칼라(이하 '경희 ES'라 한다), 인터내셔널 스칼라(이하 '경희 IS'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① 명예교수는 본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 업적이 현저하여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② 겸임교수는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③ 객원교수는 교외학자로서 본교에서 연구, 강의 또는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④ 초빙교수는 외국 거주 내·외국인학자 중 본교에서 연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⑤ 학술연구교수는 본교 특정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단위부서 또는 본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⑥ 특임교수는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⑦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외부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예산을 기반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⑧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하여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⑨ 고황명예교수는 본교에서 정년퇴직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해당 학문분야에서 탁월한 교육, 연구 및 실천 업적을 나타내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⑩ 학연교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교육 또는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⑪ 경희 ES는 세계적 수준의 학자 또는 실천가로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미래 지향적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증진, 그리고 본교의 대학운영 기조 및 정책자문을 위해 임용된 자로 관련 사항은 에미넌트·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⑫ 경희 IS는 연구역량이 탁월한 학자로서 본교의 연구성과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임용된 자로 관련 사항은 에미넌트·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명예교수

제4조(자격) ① 명예교수는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본교 발전 및 교육·학술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교수

2. 본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전적 대학교의 전임교원 경력을 통산하여 20년 이상인 교수

- ② 제1항의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재직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직 중 징계를 받은 교원
 - 2. 연구년 수행 후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의무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 ④ 제3항 제1호에 불구하고, 보직업무 수행 중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징계사유의 비위 중 개인비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직은 총장, 부총장과 처무규정 제2조의 단위부서와 본부부서의 부서장에 한한다.
 - ⑤ 재직 중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추대절차) 명예교수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고,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

제6조(추대기간) 명예교수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2(명예교수 해촉 및 회복) ①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명예교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교수 해촉 사유가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해당 명예교수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별지 1]
3.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조서 [별지 2]

제8조(처우 및 임무)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명예교수 추대 심사일(이하 ‘심사일’) 기준 직전 10개년간의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S2급 이상으로 6회 이상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심사일 기준 직전 10개년간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업적평가 10회 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 부여된 G급 또는 등급없음 횟수는 제외하며, 잔여 횟수의 60%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을 S2급 이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경우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재위촉하기 위해서는 직전 위촉기간 1년(2개 학기) 동안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 위촉 기간에 1개 학기만 강의한 경우는 해당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강의 재위촉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2개 학기 경과 후 재위촉할 수 있다.

⑤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 학기당 2강좌(매주 6시간) 이내에 한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학기 중 만 70세가 되는 경우 해당 학기까지 강의할 수 있다.

제3장 겸임교수

제9조(자격) ① 겸임교수는 교외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로 한다.

1.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포함)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전일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타 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불가)

2. 담당하게 될 교육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다만, 국내외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겸임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분야의 현장 전문가로서 겸임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기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겸임교수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재임용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계약기간내 강의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가 없거나 임용 시 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부서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그 외의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1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제17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재임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구비서류) ① 겸임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3년 이상 경력증빙서)

5. 재직증명서

6. 원소속 기관장의 동의서(기관장이 본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② 재임용인 경우의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한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겸임교수는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학기당 매주 3시간 이상 9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당 매주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4장 객원교수

제14조(자격) ① 객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교외학자로서 본교에서 연구, 강의 또는 진료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자는 객원교수가 될 수 없다. 단, 객원교수의 임용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분야의 협장 전문가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객원교수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재임용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계약기간내 강의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가 없거나 임용 시 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부서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임용절차) ① 객원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그 외의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대학(원)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기간) ①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제17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임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제17조(구비서류) ① 객원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목록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① 객원교수는 강의 및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또는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초빙교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매주 9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②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매주 3시간을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학기당 강의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장 초빙교수

제19조(자격) ① 초빙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학자
2. 외국인 학자

②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자는 초빙교수가 될 수 없다. 단, 초빙교수의 임용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③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제2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초빙교수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재임용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계약기간내 강의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가 없을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임용절차) ① 초빙교수가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그 외의 부서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대학(원)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기간)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초빙교수에 대한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인 경우, 본적이 있는 경우,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구비서류) ① 초빙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임무) ① 초빙교수는 강의 및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또는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기당 매주 9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②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매주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학기당 강의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6장 학술연구교수

제24조(자격) ① 학술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자는 학술연구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분야의 현장 전문가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술연구교수의 재임용은 연구실적 및 강의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5조(임용절차) ① 학술연구교수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그 외의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및 외부연구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술연구교수가 연구 외에 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장을 준

용하여 강의를 개설한 대학(원)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6조(임용기간) ① 학술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연구프로젝트 등 기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인 경우, 본적이 있는 경우,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재임용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학술연구교수의 경우 관련 고용기준에 따른다.

제27조(구비서류) ①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목록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① 학술연구교수는 연구 외에 강의 및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또는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강의를 담당할 경우는 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로 하며,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7장 석좌교수

제29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명망이 있는 자 또는 산학협력 및 대정부협력을 공고히 하여 본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로 한다. 학기 중 만 70세가 되는 경우 해당 학기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및 학술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임용절차) ① 총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한다.

② 교비재원 석좌교수의 경우 부서장의 추천과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또는 캠퍼스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기금석좌교수의 경우 각 대학(원) 대학발전기금, 기업, 단체 등의 특정기부금 재원을 기반으로 석좌교수 기금을 설치하고 우수학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좌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거나 석좌기금관리위원회가 대학발전 및 설립목적에 맞는 특정석좌기금을 조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자의 제반 서류 및 진행 절차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 및 경력, 역할 등을 고려 임용 직급 및 연봉을 심의한다.

제31조(석좌기금관리위원회) 석좌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추천자의 제반 서류 및 진행 절차 검토 및 적합 여부 심의
2. 경력, 역할, 기금규모, 기부자 기부의사 등을 고려한 임용 직급 및 연봉 심의

제32조(임용기간) ①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기금석좌교수의 경우 석좌교수기금 또는 기부금이 계속 출연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임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제33조(구비서류) ① 석좌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목록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임무) ①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금 기탁기관의 기부목적에 맞는 교육 및 연구 수행
 2. 산학협력사업 및 대정부협력사업 추진
 3. 그 외 학교에서 부여하는 업무
- ② 석좌교수의 강의, 연구, 실천사업 등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채용 시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제35조(명칭부여 등) 총장은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의 석좌 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재원) ① 기금석좌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 기탁금, 부담금 및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등으로 출연된 기금의 과실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제8장 고황명예교수

제37조(자격 및 명칭 부여) ① 고황명예교수는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해당 전공 분야에서 교육, 연구 및 실천 업적이 탁월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직 예정자
2. 자격 심사일 기준 최근 10개년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E급으로 7회 이상 선정된 자(대상기간 중 G급으로 1회 이상 선정된 자는 제외)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2017년 이전의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결과는 평가계열별(서울·국제 통합) 상위 10% 이내를 E급으로 간주함
나. 심사일 기준 직전 최근 10개년간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업적평가 10회 중 휴직 사유로 인해 자동 부여된 “G급” 또는 “등급없음”은 선정결과 횟수에서 제외하고, 총 10회의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결과를 적용함

3. 재직 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고, 연구년의 의무를 이행한 교원

② 비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는 교육트랙과 연구산학 트랙으로 구분되며, 연구산학트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년퇴직 후 1년까지 연간 일정금액 이상 교외연구과제 수주가 확약되어 있거나 연구기금을 확보한 자. 단, 연구비 기준은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계열별로 기준을 정함
 2. 퇴직 후 소속을 희망하는 부서의 동의와 추천을 받고 향후 연구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연구실 및 실험실이 필요한 교원의 경우 공간관리자와 공간사용 협력을 득한 자
- ③ 총장은 제1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세계 수준의 학문적 탁월성을 보유한 자 또는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무 및 처우를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고황명예교수에게 영예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석학, 석좌 등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임무 및 트랙전환) ① 교육트랙 고황명예교수는 학기당 매주 최대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연구산학트랙 고황명예교수는 연구활동과 연간 매주 최대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연구산학트랙 고황명예교수가 최초 임용기간 3년 동안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시 강의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연구산학트랙에 한하여 매년 연구활동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차년도 연구비 금액이 최초 임용 당시의 연구비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교육트랙으로 전환된다.

③ 연구산학트랙 고황명예교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트랙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트랙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는 의료기관내 진료를 담당한다.

⑤ 공학, 자연 및 의약학계열 고황명예교수에 대한 처우(실험 공간 및 연구보조인력 등)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심사기준) ① 고황명예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재임용시 고황명예교수의 트랙별 재임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트랙의 경우 재임용 심사 당시 기준 최근 5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
2. 연구산학트랙의 경우 3년차 연차평가 결과 차년도 연구비 수주 예정금액이 최초 임용 당시의 연구비 기준 이상. 단, 연구산학트랙 재임용 후 강의수행을 위해서는 임용기간 내 강의를 담당하고, 임용기간 중 강의 수행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의 재임용 기간 및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캠퍼스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추가로 1회 재임용할 수 있다.

1.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임용된 고황명예교수가 고황명예교수 재직 동안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고황명예교수 재직 동안 HCR(Highly Cited Researchers) 3회 이상 선정 또는 이에 준하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업적으로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임용 조건이 연구 및 실기업적 대체로 정해진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⑤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경희대학교의료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임용절차) ① 비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교무처장은 고황명예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한 교원을 선정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소속 부서장은 고황명예교수 기준을 충족한 소속 교원에 대해 교원의 신청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후 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3. 교무처장은 각 대학(원)의 추천내용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4.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에 대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교무처장은 고황명예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한 교원을 선정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소속 부서장은 고황명예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한 소속 교원에 대해 해당 병원의 추천, 교원의 신청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후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3. 교무처장은 임상계열 추천내용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4.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에 대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고황명예교수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41조(구비서류) ① 고황명예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부서장 추천서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명예교수 추대) 고황명예교수 중 정년퇴직 당시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의 경우 고황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될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장 학연교수

제43조(자격) ① 학연교수는 본교와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 법령 및 협약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② 학연교수가 재임용 후 강의를 연속하여 담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임용기간 강의담당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임용절차) ① 학연교수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및 외부연구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연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강사 신규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장을 준용하여 강의를 개설한 대학(원)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임용기간) ① 학연교수의 임용기간은 학연협약에 의한다. 단, 학연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및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비서류) ① 학연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령권자는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소속 연구기관장 추천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제1항의 제2호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임무) ① 학연교수는 강의 및 논문지도 또는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매주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임무에 대한 기타 사항은 학연협약에 따른다.

제48조(처우) 학연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연협약에 따른다.

제10장 특임교수

제49조(자격) ① 특임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고, 전문분야의 경력이나 업적이 뛰어나 본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한다. 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 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분야의 현장 전문가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임용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을 종료일로 하되, 전문분야의 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0조(임용절차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며, 그 외의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특임교수 추천서와 활용계획서[별지 제3호] 등을 바탕으로 특임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사회적 공헌도, 임용 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처우, 재임용 등을 심의한다.

③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소속 부서장이 계약종료 1개월 전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별지 제4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재임용된 특임교수가 강의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계약기간 중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51조(임용기간)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재임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수행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제52조(구비서류) ① 특임교수의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2. 특임교수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특임교수 활용계획서[별지 제3호]

② 재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소속 부서장 재임용 추천서
2.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별지 제4호]
3.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제11장 처우 및 징계

제53조(처우) 비전임교원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4조(퇴직·면직)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되며 별도의 퇴직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교원이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처리 할 수 있다.

1. 겸임교수가 임용기간 중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석좌교수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금과실의 규모가 감소될 경우 또는 부담금 담당 기관에서 보수지급을 중단할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5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험저히 어려운 자
- (②) 그 외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0조(직위해제)를 준용하되, 「교원인사기본규정」 제20조 제7항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로 본다.

제56조(징계) ①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 감사팀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되, 연구윤리진 실성위원회 또는 인권센터의 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위원회 또는 부서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 (④) 총장은 교원윤리의 차원에서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비전임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7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당시에 이미 비전임교원으로 임명된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한 비전임교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제4조의 임기의 계산은 규정 시행일로부터 한다.
3. 본 규정의 제2조 제2항 제2호는 1992년 8월 31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초청·명예교수 규정은 폐지한다.
3.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비전임교원 및 명예초청교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대된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1일부터 제8조 제3항 및 제9

조 제3항을 적용한다.

3. (규정의 폐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겸임교원규정, 학기제교원임용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연구, 강의교수 및 비전임교원의 임기는 개정전 규정에 적용받으며, 본 규정 개정일 이후 재계약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3.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 강의교수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교원, 강의교원제도는 폐지하며, 본 규정 개정 이전에 발령된 비전임교원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며, 차기 재계약시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3. (지침의 폐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 강의교원의 연임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1조의 교수(명예)의 명예교수 전환은 본 규정 개정 이전에 발령된 교수(명예)에게도 적용 한다.

② 제47조 내지 제51조는 2012년 2월 정년퇴임한 교원부터 적용하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정년퇴임한 교원이 비임상계열 교수(정년연장)로 신규발령 받기 위해서는 제47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근 10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5년 이상 상위 40%이내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기 시행일 기준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제2조(비전임교원의 구분)을 적용하여 신규 발령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이전에 발령된 비전임교원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며, 차기 재계약시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특임교수 제도 폐지 관련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명예특임교수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022.02.28.까지 명예특임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2022.03.01. 이후에는 해당교원을 객원교수로 전환하여 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교수 강의 위촉 자격 기준에 대한 적용 및 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의 강의위촉 자격 기준은 2023년 2월 28일자 퇴직 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강의 위촉 자격조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23년 및 2024년 퇴직 교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1. 2023년 2월 28일부 퇴직 교원: 심사일 기준 직전 10개년간의 교수업적평가 차등그룹 S2 이상으로 4회 이상 선정되었거나 심사일 기준 직전 2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학기가 1개 이상일 경우

2. 2023년 8월 31일부 퇴직 교원: 심사일 기준 직전 10개년간의 교수업적평가 차등그룹 S2 이상으로 4회 이상 선정되었거나 또는 심사일 기준 직전 2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3. 2024년 퇴직 교원: 심사일 기준 직전 10개년간의 교수업적평가 차등그룹 S2 이상으로 5회 이상 선정된 경우

제3조(교수(명예)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수(명예)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교수(명예)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교수(명예) 중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의 경우 교수(명예) 발령 종료 시 교원인 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다만, 명예교수 전환 심사일 기준 명예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③ 명예교수로 전환 시, 명예교수 전환 심사일 기준 직전 2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일 경우에 한하여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고황명예교수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고황명예교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고황명예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황명예교수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신분을 유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년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2024년 2월 29일부 정년(명예)퇴직 교원 중 2022년 9월 1일 부 연구년 복귀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년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연구년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별지 1] 명예교수 추천서

추 천 서

소 속			
직 급	명예교수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성 명		퇴직 예정일	년 월 일
추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강의위촉 가능여부			

추천인 : _____ 대학(원)장 _____(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 2] 명예교수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성 명			
직 급	명예교수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본교 근무기간 (전임교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주요 논문 및 저서 (주요 작품활동)	논문 : 편, 저서 : 편, 기타(전시회, 발표회) : 회		
	주요논문 :		
	주요저서 :		
	기 타 :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내용			

작성자 : _____ 대학(원) _____ (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 3]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주요경력
- 학위명, 연도, 학교명, 전공	- 연도, 직급, 학교명
-	-
-	-

■ 활용계획 및 계약조건

구분	계약조건 요청(안)	활용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분 : 특임교수(비전임)▪ 소 속 :▪ 계약기간 :▪ 근 무 일 :▪ 근무시간 :▪ 계약조건<u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 :2) 교육 :3) 기타 :▪ 처우조건(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종료 1개월 전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정성평가 포함 정량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임무 및 역할 부여
특이 사항		

※ 상기 조건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서류 - 심의를 위한 기타 자료

- 재임용 신청 시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 제출

20 년 월 일

OO대학(원)장 (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 4]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

특임교수 수행실적 평가표

1. 인적사항

특임교수	소 속		성 명	
	직 급		임용 기간	

2. 계약조건 이행 여부

구분	임용 시 계약 내용	실적(건별 세부사항 기재) [별지 세부내용 작성 후 첨부 가능]
계약 조건	[연구]	
	[교육]	
	[기타]	
특이 사항		

3. 재임용 의사 여부:

※첨부: 연구/교육실적물 및 기타활동 증빙자료

20 년 월 일

OO대학(원)장 (인)

교무처장 귀하